

서울특별시 강서구 통·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| | |
|----------|----------|
| 의안 번호 | 2022-107 |
|----------|----------|

제출년월일 : 2022년 11월 일

제 출 자 : 강서구청장

1. 의결주문

서울특별시 강서구 통·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」 및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이 2022. 1. 13.자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인용 조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통장 임명권자를 동장으로 변경하는 등 법 적합성을 높이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「지방자치법」 인용 조문 개정(안 제1조)

나.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81조 변경에 따라 통장 임명권자를 동장으로 변경 및 문구 수정(안 제4조, 제5조, 제6조, 제7조, 제14조, 제22조)

다. “다른 장학금을 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.”라는 단서조항을 “타 장학금을 받는 경우 타 장학금을 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지급액보다 적으면 이미 받은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한다”로 변경하여 통장 자녀 장학금 수혜 자격 확대(안 제16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 제7조 및 제12조,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81조

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:

1) 입법예고(2022. 9. 16. ~ 2022. 10. 6.): 의견 없음

2) 규제심사 결과: 해당 없음

3) 부패영향평가 결과: 원안 동의

4) 성별영향평가 결과: 통장심사위원회 구성 시 성별 고려 사항 반영

서울특별시 강서구 통·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강서구 통·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4조의제5항 및 제8조제1항”을 “「지방자치법」 제7조의제5항 및 제12조제1항”으로 한다.

제4조제3항 중 “위촉해제 되었”을 “해임되었”으로, “위촉된”을 “임명된”으로, “위촉일”을 “임명일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위촉 및 위촉 해제”를 “임명 및 해임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포함하여”를 “포함하되 성별을 고려하여”로 한다.

제6조의 제목 “(통장 및 반장의 위촉)”을 “(통장 및 반장의 임명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추천하고 구청장이 위촉한다”를 “임명한다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위촉한다”를 “임명한다”로 한다.

제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제2항에 따라 통장을 임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7조의 제목 “(통장 및 반장의 위촉해제)”를 “(통장 및 반장의 해임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구청장 또는 동장”을 “동장”

으로, “위촉해제 하여야”를 “해임하여야”로 하며,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“위촉해제 한다”를 “해임한다”로 한다.

제14조 전단 중 “구청장”을 “동장”으로, “위촉한”을 “임명한”으로 한다.

제1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통장 자녀가 타 장학금을 받은 경우 타 장학금을 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지급액보다 적으면 이미 받은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한다.

제22조제1항제1호 중 “위촉 해제된”을 “해임된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통·반장에 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통·반장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.

제3조(통장신분증에 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신분증은 이 조례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본다.

③·④ (생략)

제6조(통장 및 반장의 위촉) ①
(생략)

② 통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
공개모집 하며, 위원회의 심사
를 거쳐 동장이 추천하고 구청장
이 위촉한다.

1. ~ 3. (생략)

③ 반장은 해당 반의 관할구역
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에
서 동장이 위촉한다.

<신설>

제7조(통장 및 반장의 위촉해제)
구청장 또는 동장은 다음 각 호
와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
당 통장 및 반장을 즉시 위촉해
제 하여야 한다. 다만, 제4호부
터 제7호까지의 각 호 중 어느
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
회 심사를 거쳐 위촉해제 한다.

1. ~ 7. (생략)

제14조(통장신분증 발급) 구청장
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촉한
통장에게 통장의 신분증을 표시하

③·④ (현행과 같음)

제6조(통장 및 반장의 임명) ①
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 임명한다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----- 임명한다.

④ 제2항에 따라 통장을 임명한
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청장에게
보고하여야 한다.

제7조(통장 및 반장의 해임) 동장

----- 해임하
여야 ----- . -----

----- 해임한다.

1. ~ 7. (현행과 같음)

제14조(통장신분증 발급) 동장--
----- 임명한 --

는 신분증(이하 “통장신분증”이라 한다)을 발급할 수 있다. 통장신분증의 규격·기재사항 및 사용·관리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16조(장학생의 자격) (생략)

<신설>

제22조(장학금의 지급정지)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

1. 보호자인 통장이 임기만료, 전출, 사직 등으로 통장 직에서 위촉 해제된 때
2. (생략)
- ② (생략)

-----.

-----.

제16조(장학생의 자격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

② 통장 자녀가 타 장학금을 받은 경우 타 장학금을 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지급액보다 적으면 이미 받은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한다.

제22조(장학금의 지급정지) ① --

-----.

1. -----

-- 해임된 -----
2. (현행과 같음)
- ② (현행과 같음)

서울특별시 강서구 통·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해당사항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
제9조제4항제1호

3. 미첨부 사유

-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, 조문 본문의 변경 등을 통해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임
- “다른 장학금을 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”라는 단서조항을 수정(안 제16조)하여 통장 자녀 장학금 수혜 자격을 확대하지만 추가 예산 발생하지 않음

4. 작성자

| | |
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성 명 |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(담당자: 행정8급 이지훈) |
| 연락처 | 02-2600-6706 |

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

| | | | | |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|-----|
| 평가번호 | 2022-28 | | | | |
| 자치법규명 |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·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| | | | |
| 평가담당부서 | 감사담당관 | 직급 | 행정7급 | 성명 | 김완주 |
| 입안주무부서 | 자치행정과 | 통보(조치)일 | | 2022. 9. 28. | |
| 관련조문 | | 검토결과 | | 조치사항 | |
| 개정 조례안 전부 | | 원안 동의 | | 없음 | |

규제 사전심사 검토의견서

□ 자치법규명

-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·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□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」 및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이 2022. 1. 13.자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인용 조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통장 임명권자를 동장으로 변경하는 등 법 적합성을 높이고자 함.

□ 주요내용

- 가. 「지방자치법」 인용 조문 개정(안 제1조)
- 나.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81조 변경에 따라 통장 임명권자를 동장으로 변경 및 문구 수정(안 제4조, 제5조, 제6조, 제7조, 제14조, 제22조)
- 다. “다른 장학금을 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.” 라는 단서조항을 “타 장학금을 받는 경우 타 장학금을 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지급액보다 적으면 이미 받은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한다” 로 변경하여 통장 자녀 장학금 수혜 자격 확대(안 제16조)

□ 검토의견

- 동 개정안은 「지방자치법」 및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인용 조문 및 통장 임명권자를 동장으로 변경하는 등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,
- 「행정규제기본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규제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

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

| |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|---|--------------|
| 관리번호 | 2022A서울강서028 | | | |
| 정책명 |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·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| | | |
| 소관부서 | 기관명 | 서울특별시 강서구 | | |
| | 부서명 | 자치행정과 | | |
| | 담당자명 | 이지훈 | 전화번호 02-2600-6706 | |
|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| 2022년 9월 19일 | | | |
| 성별영향평가 내용 (자치행정과) | '서울특별시 강서구 통·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'은 「지방자치법」 및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이 2022. 1. 13.자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인용 조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통장 임명권자를 동장으로 변경하는 등 법 적합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. | | | |
| 종합 검토 의견 (성별영향평가 책임관) | <input type="checkbox"/> 개선사항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자체개선안 동의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개선의견 <input type="radio"/> 제5조제2항과 관련하여 의사결정을 위한 위원회 및 자문단을 구성할 시 위촉위원의 성별균형을 고려할 것을 제안함. | | | |
| | ※참고 양성평등기본법[시행 2021. 4. 20.] [법률 제18099호, 2021. 4. 20., 일부개정] 제21조(정책결정과정 참여) ①(생략)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(위원회, 심의회,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, 협의,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. 이하 같다)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 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의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20. 5. 19.> 1. 국가 및 시·도가 구성하는 위원회: 실무위원회 2. 시·군·구가 구성하는 위원회: 시·도위원회 | | | |
| | 구분 | 해당 내용 (제·개정 법령안) | 개선안 (법령 수정안) | 검토사유 |
| | 1 | 제5조(통장심사위원회의 구성·운영) ①(생략) ② 위원회는 비상설기구로 하고,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. ③~④(생략) | 제5조(통장심사위원회의 구성·운영) ①(생략) ② 위원회는 비상설기구로 하고, 위원장을 포함하 되 성별을 고려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. ③~④(생략) | 종합검토의견 참고 |
|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| 2022년 10월 5일까지 | | | |

「성별영향평가법」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.

2022년 09월 28일

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복지국장

(담당자/연락번호 : 안소현/02-2600-6762)

자치행정과장 귀하

지방자치법

제7조(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·면·동 등의 명칭과 구역) ⑤ 행정동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 등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. <개정 2021. 4. 20.>

제12조(사무처리의 기본원칙) ① 지방자치단체는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지방자치법 시행령

제81조(이장 및 통장의 임명) ①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통에는 통장을 두고,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읍·면의 행정리에는 이장을 둔다.

② 제1항에 따른 이장 및 통장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장·면장·동장이 임명한다.

③ 읍장·면장·동장이 제2항에 따라 이장 및 통장을 임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장·군수 및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.